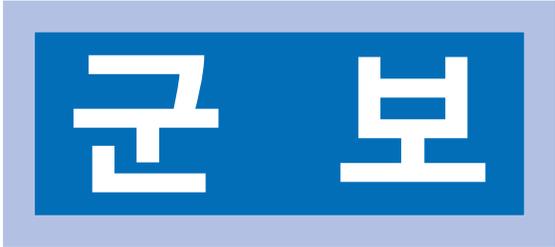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389호 2017. 12. 5(화)**

**조      례**

장수군 조례 제 2252호	-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 2253호	-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장수군 조례 제 2254호	-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6
장수군 조례 제 2255호	-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12
장수군 조례 제 2256호	-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장수군 조례 제 2257호	-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9
장수군 조례 제 2258호	-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5
장수군 조례 제 2259호	-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60
장수군 조례 제 2260호	-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68
장수군 조례 제 2261호	-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장수군 조례 제 2262호	-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훈      령**

장수군 훈령 제 543호	-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84
---------------	------------------------------	----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7 - 119호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고시	88
장수군 고시 제 2017 - 12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89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911호	도로지정 공고	90
장수군 공고 제 2017 - 941호	수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91
장수군 공고 제 2017 - 943호	원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95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

장수군 조례 제 2252호

##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제7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범위 확대(제7조제1항)

장수군 조례 제 2253호

##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78” 을 “49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64” 를 “479” 로 한다.

별표 3 중 “478” 을 “493” 으로 하고, 같은 표 중 “446” 을 “460” 로 하며, 같은 표 중 “420” 을 “434” 로 하며, 같은 표 중 “4” 를 각각 “5”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493					
정무직 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460					
4급	2	1		1		
4-5급	2	2				
5급	21	9	2	2	1	7
6급이하 계	434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계	1					
연구직 계	5					
연구사	5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제2조)

-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478명 ⇨ 493명(+15)
- 집행기관의 정원 : 464명 ⇨ 479명(+15)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없음)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별표3)

- 총 계 : 478 ⇒ 493(+15)
- 일반직 계 : 446 ⇒ 460(+14)
- 6급 이하 계 : 420 ⇒ 434(+14)
- 연구직 계 : 4 ⇒ 5(+1)

장수군 조례 제 2254호

##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제4조(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10인 이하를 선정
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 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6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성 실 납 세 자 증

- 제 20 - 호
- 성명(법인명) :
- 주 소 :
- 유효기간 : 20 . . . ~ 20 . . . (1년)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성실납세자 등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제5조)

다. 명부관리 및 선정 취소 규정을 정함(제6조, 제7조)

장수군 조례 제 2255호

##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장 수 군 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 현장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5.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세무경력 5년 이상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납세자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 여부 심사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제1항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자(이하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자 선발 시 우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①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고충민원 처리

#### 제1절 통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그 밖에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 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군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군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2절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 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및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권한 관련된 것)
2. 제1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 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 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그 밖에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사람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사람

⑥ 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 · 회의일자 · 의견진술 신청 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6항 및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 여부 · 처리내용의 이해 여부 ·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 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 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 등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훈령·예규·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 제도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훈령집·예규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납세자권리현장

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①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에게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게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 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 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 여부, 환급기한의 준수 여부, 물납신청의 수용 여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 여부,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 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 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여부 등

3. 기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 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밖에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장 보고

제46조(보고)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 과장	부군수	군 수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예상)과세처분또  
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 또는 시정요  
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 내용 또는 시  
정요구·소명요구 내  
용

년 월 일

○○○ 실·과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고층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당 초 처 리 기 한		처 리 예 정 기 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예상일수			
<p>귀하가 제출하신 고층민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 (인)</p>			
<p>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54g/m<sup>2</sup>)



[별지 제 4호서식]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장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  
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 실·과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자	팀장	재무과장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의 견 및 처 리 내 용				
첨부 : 정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별지 제 6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 과장	부군수 군 수
(접수번호 :        )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층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p>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위 원 장 (인)              위 원 (인)           </p>					
<p>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p>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b>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b>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처 리 일 자
고 충 내 용			
처 리 내 용			
<b>장 수 군 수 (인)</b>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별지 제9호서식]

##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목			처리기한	
상담요지				
상담자성명:           전화번호:				
○ ○ ○ 실·과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 10호서식]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 과장	부군수	군 수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사결과				
징수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등					
세원관리분야	1.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3. 기 타					
조사분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현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 11호서식]

##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 과장	부군수	군 수

작성일자 :

제 목 :

현 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기 대 효 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sup>2</sup>)



## 1. 제정이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제3조 내지 제11조)
- 다.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제12조 내지 제34조)
- 라.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제35조 내지 제40조)
- 마.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제41조 내지 제43조)
- 바. 지방세 제도개선(제44조 및 제45조)
- 사. 납세자보호관 활동사항 보고(제46조)

장수군 조례 제 2256호

##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군의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을 “민간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13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을 “(주민참여대상공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공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주민참여 대상 공사 상한금액 삭제 등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삭제(제2조제2항)
-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상자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제2조제3항)
- 다.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 및 공원공사 신설 (제13조)

장수군 조례 제 2257호

###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2.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전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다. 위원회의 운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회의, 위원의 의무, 회의의 비공개, 의견 청취,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회의록, 현지조사, 간사, 운영세칙

장수군 조례 제 2258호

##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이상 눈이 쌓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 명시(제3조)

– 시설물의 지붕 추가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규정(제4조)

장수군 조례 제 2259호

##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 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 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 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확인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인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	--	--	--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충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	--------------	-----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	--------------	-----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장수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장수군수가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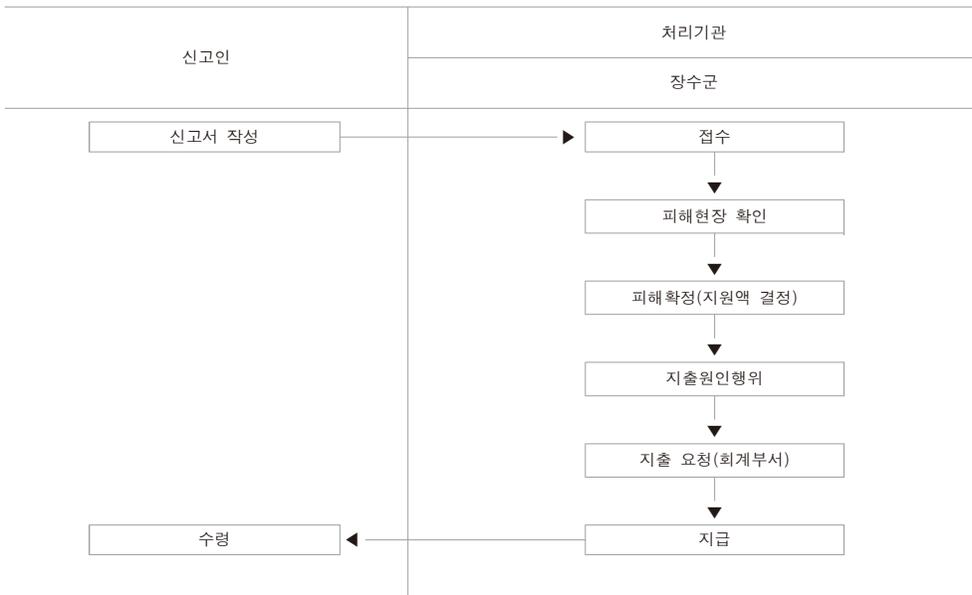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1. 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체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용 범위 (제2조)
- 나. 지원 결정 (제3조)
- 다. 지원 기준 (제4조)
-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6조)
-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7조)
- 바. 지급방법 (제8조)
- 사. 재원의 확보 (제10조)

장수군 조례 제 2260호

##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정서적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3. “장년층 1인가구”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군 관내의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수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장년층 1인가구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특별히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자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5. 그 밖에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제4조)
- 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다.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제6조)
-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7조)

장수군 조례 제 2261호

###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호 중 “용역” 을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 노무용역” 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노무비 지급” 으로, “별지 제3호” 를 “별지 제5호” 로, “사용” 을  
“청구” 로, “준공시” 를 “기성, 준공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근로자 사역” 을 “노무비 지급내역” 으로, “사용여부를” 을 “청구  
내역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금 지불 서약서

우리업체에서는 장수군수가 발주한 ( )공사·용역을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건설기계 소유자 포함)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 (분임)재무관 귀하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건설기계 사용내역 관련 제출 서식도 유사한 내용을 이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체불임금 방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 대상 범위 구체화(제3조)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제출서식 통일(제5조)
- 다. 건설기계 사용내역 관련 제출서식을 일원화(제5조)
- 라. 서식통일에 따른 조문삭제 및 이동(제5조 3항)
- 마.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8조)
- 바. 회계관직 명칭 변경사항(경리관→재무관) 반영(별지 서식 제1호, 5호)

장수군 조례 제 2262호

###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 2” 를 “해당 품목별 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별표 2”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부서의견” 을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와 의견”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시 농산물의 경우 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를 “1.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 상태,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여부 등”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일 반 여 건	1. 생산조직	10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10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	10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 신용도가 보통	
소계				
생 산 여 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10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	10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	10	○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하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품목에 허가된 농약사용	
		7	○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하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가제조농약 및 영양제사용	
		5	○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이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호르몬제사용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10	○ 신청품목 생산 관련 시설, 자재의 충분한 확보	
		7	○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소계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품 질 관 리 여 건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10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5	○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	10	○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7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5	○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	○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7	○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소계			
가점	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		인증명칭	
합계	점		종합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p>심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판정.</li> <li>○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li> </ul>				

## 【별지 제2호서식】

##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제10조제3항 관련)

승인번호		제 호	
사용권자	법인·조직명	인증상표로고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 ☎ )	
사용승인 내역	승 인 품 목		
	승 인 물 량		
	생산지 주소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제사용 여·부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가 무제초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담보한 식재료의 경우에만 급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조례에서는 무제초제 검사에 대한 항목이 없어 인증을 받더라도 급식 농산물로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제초제 사용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급식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전심사를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제9조제3항, 제4항)
- 나. 농산물의 경우 인증심사 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조항 신설 (제9조제6항)
- 다. 인증상표 사용승인 후에도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 정지, 취소 조항 신설(제14조제1항제6호)
- 라. 인증 이후 제초제 사용 여부에 대해 군수가 사후 관리 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제15조제2항제1호)
- 마. 심사기준에 제초제 사용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별표 2)
- 바. 제초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훈령 제 543호

##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7년 12월 5일

### 장 수 군 수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취급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업소)	
	소재지		전화번호(주택)	
			전화번호(H·P)	
송금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좌번호	은행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급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 수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사랑 상품권 취급점 지정 승인서		등록번호
		제 호
승 인 내 역	성 명	
	상 호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p>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사랑 상품권 취급점으로 지정 승인하오니 동 규정 제8조의 취급점 준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인)</p> <p>취급점 대표    귀하</p>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장수사랑 상품권 취급점 지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장수사랑상품권 취급점 지정 승인서)의 신청인 및 승인내역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장수군 고시 제 2017-119호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11조 따라 「대적골제철유적 외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 장 수 군 수

1. 고 시 명 :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지정 고시 (등록번호는명칭 가,나,다 순으로 지정)

2. 지정문화재내용

가. 지정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	제작년대	관리자	소재지
기념물 제1호	대적골 제철유적	101,000㎡	가~마지구	삼국~라말여초	장수군수	장계면 명덕리 산154-1, 346-2
유형문화재 제14호	만취정	2동	3칸*3칸 2칸*1칸	조선	장수군수	번암면 죽산리 산18-2
유형문화재 제15호	벽계정	1동	3칸*2칸	조선	송인섭	장계면 삼봉리 32-31
기념물 제2호	영취산봉수	1,620㎡	발굴조사구역	삼국	장수군수	장계면 대곡리 산92-26
유형문화재 제16호	절부원씨정려각	1동	1칸*1칸	조선	밀양박씨 국당공파 비암종중	산서면 백운리 771
유형문화재 제17호	효자육호진정려각	1동	1칸*1칸	조선	육천육씨종 친회	산서면 마하리 253-1

나. 지정 사유

- 장수군 지역의 건축물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배향된 인물 등의 역사적 가치 평가, 후손들의 보호의지 등이 높아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보존할 필요성이 높다.
-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중요 유적으로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보호 관리될 필요성이 높다.

3. 지정일자 : 관보 및 홈페이지 고시일

4. 참고사항

-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접수는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063-350-556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장수군 고시 제 2017-123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사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규정」 제1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 장 수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단위: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승인면적 (㎡)	사업 시행자	공사비 예정액	사업기간	비고
읍·면	리								
장계	명덕	1627-11	임야	6,321	4,920	조정호	96,030	승인일로부터~ 2018.11.30.	
장계	금덕	산59	임야	32,494	기존 4,980 변경 4,870	정진환	기존 73,568 변경 49,676	승인일로부터~ 2018.07.30.	변경 승인

3.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4. 지형도면 : 실음생략

장수군공고 제 2017 - 911호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7년 11월 17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노곡리 산 26-17, 1438-18 산 26-13	73.20m	3m	223㎡	김양수, 국, 김성수	

2017년 11월 1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고 제 2017-941호

### 수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 장 수 군 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수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수군수
-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7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7,645m<sup>2</sup>
- 사업규모 : 제방축제 L=1.47km

자연석쌓기 3,560m<sup>2</sup> 옹벽블럭 458m<sup>2</sup>

교량 5개소

취입보 및 낙차공 14개소

배수통관 4개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063-350-2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세목조사**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61필지		81,235	12,881			
1	장수	수분	544	임	545	1			
2	장수	수분	544-1	임	22	22			
3	장수	수분	547-1	답	31	19			
4	장수	수분	970-6	천	7,497	3,956			
5	장수	수분	548	대	579	89			
6	장수	수분	976-2	도	4,131	456			
7	장수	수분	566	대	502	12			
8	장수	수분	601	대	317	6			
9	장수	수분	600-1	대	25	4			
10	장수	수분	600	대	858	83			
11	장수	수분	599	대	208	40			
12	장수	수분	597-1	답	450	134			
13	장수	수분	596-1	전	159	37			
14	장수	수분	454	답	2,314	186			
15	장수	수분	1066	도	713	23			
16	장수	수분	1061	구	2,213	19			
17	장수	수분	1030	답	1,118	143			
18	장수	수분	1029	답	1,694	69			
19	장수	수분	1028	답	2,157	84			
20	장수	수분	1027	답	1,980	97			
21	장수	수분	1026	답	2,046	104			
22	장수	수분	1025	답	632	35			
23	장수	수분	1024	답	1,367	72			
24	장수	수분	1071	천	3,874	3,372			
25	장수	수분	1023	답	2,011	101			
26	장수	수분	1022	답	888	2			
27	장수	수분	1040	답	1,444	9			
28	장수	수분	1039	답	1,969	75			
29	장수	수분	1067	도	2,786	729			
30	장수	수분	1038	답	1,360	42			
31	장수	수분	1037	답	562	19			

**편입토지세목조사**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32	장수	수분	1036	답	1,960	50			
33	장수	수분	1035	답	1,922	38			
34	장수	수분	1034	답	1,967	34			
35	장수	수분	1033	답	1,913	9			
36	장수	수분	453	답	1,035	245			
37	장수	수분	689-1	답	2,188	444			
38	장수	수분	689-2	답	2,380	662			
39	장수	수분	977	도	528	65			
40	장수	수분	687-1	답	2,493	145			
41	장수	수분	684-1	답	510	60			
42	장수	수분	684-4	도	383	34			
43	장수	수분	684-2	도	112	9			
44	장수	수분	684-3	답	83	11			
45	장수	수분	683-1	대	434	2			
46	장수	수분	607-1	답	99	4			
47	장수	수분	606-1	답	46	9			
48	장수	수분	0-12	가	54	3			
49	장수	수분	979	구	2,070	2			
50	장수	수분	618	임	93	17			
51	장수	수분	622-1	임	54	48			
52	장수	수분	622	임	2,310	70			
53	장수	수분	623	대	60	40			
54	장수	수분	624	답	69	7			
55	장수	수분	625-1	답	20	20			
56	장수	수분	625	답	545	192			
57	장수	수분	483-1	전	4,585	39			
58	장수	수분	산57-9	임	1,434	296			
59	장수	수분	산57-8	임	277	96			
60	장수	수분	970-9	천	3,805	161			
61	장수	수분	1062	도	1,354	29			

장수군 공고 제 2017 - 943호

## 원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 장 수 군 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원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수군수
-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3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0,224㎡
- 사업규모 : 제방축제 L=1.47km

자연석쌓기 2,092㎡ 호안블럭 8,194㎡

교량 4개소

취입보 및 낙차공 15개소

배수통관 9개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063-350-2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지조서(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공시지가 (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5	도	806	144	662			국	국토해양부		
2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20	구	3,046	156	2,890			국	농원축산 식품부		
3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0	답	165	165	-	4,670					
4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6	도	129	129	-			국	국토해양부		
5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1	답	301	31	270						
6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3-50	천	27,325	6,323	21,002			국	국토교통부		
7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2	답	1,228	623	605						
8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7	도	469	51	418			국	국토해양부		
9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5	대	264	13	271						
10	전북	광수	산서	마하	산95-4	임	13,686	14	13,672						
11	전북	광수	산서	마하	802	도	584	22	562			국	국토해양부		
12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13-1	묘	1,121	10	1,111						
13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8	도	2,427	990	1,437			국	국토해양부		
14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31-2	도	33	4	29						
15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31-1	답	493	33	460						
16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81-1	대	340	12	328						
17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30	전	129	47	82						
18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29	대	212	49	163						
19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85-1	대	288	61	227						
20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85-2	도	10	10	-						
21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85-3	도	17	2	15						
22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94-2	도	3	3	-						
23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94-1	대	317	5	312						
24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95-1	대	410	57	353						
25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95-2	도	10	10	-						
26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92-5	도	8,214	81	8,133			국	농원축산 식품부		
27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20	답	33	28	5						
28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99-2	도	3	1	2						
29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17	답	428	428	-						
30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00-1	대	122	28	94						
31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00-2	도	40	30	10						
32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00-3	도	30	8	22						
33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15-3	도	13	2	11						
34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15-1	대	477	37	440	12,700					
35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15-2	도	13	13	-						
36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50	답	1,778	170	1,608	7,90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7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15-4	대	290	33	257						
38	전북	광수	산서	마하	268	대	231	19	212						
39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9	답	1,714	154	1,56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40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3-49	천	50	16	34			국	국토교통부		
41	전북	광수	산서	마하	793-48	천	110	110	-			국	국토교통부		
42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8	답	1,661	134	1,527						
43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7	답	1,646	95	1,551						
44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6	답	1,201	121	1,080						
45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5	답	1,585	198	1,387						
46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4	답	1,478	188	1,292						
47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3	답	630	75	555						
48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42	답	658	73	585						
49	전북	광수	산서	마하	1097-3	도	6,834	5,665	1,169			국	농원축산 식품부		

용지조서(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공시지가 (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0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41	답	1,217	161	1,056						
51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6	답	1,838	8	1,830						
52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40	답	1,371	345	1,026						
53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5	답	853	10	843						
54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4	답	978	14	964						
55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3	답	1,586	25	1,571						
56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39	답	1,386	390	996						
57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2	답	1,354	100	1,254						
58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117	구	868	17	851		국	농림축산 식품부			
59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38	답	1,050	233	817						
60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21	답	968	62	906						
61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116	도	772	27	745		국	농림축산 식품부			
62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37	답	1,523	234	1,289						
63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6	답	685	7	678						
64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5	답	1,116	13	1,103						
65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36	답	1,452	245	1,207						
66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4	답	1,820	26	1,794						
67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3	답	1,929	27	1,902						
68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35	답	1,094	225	869						
69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2	답	917	9	908						
70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123	구	285	60	225		국	농림축산 식품부			
71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1	답	970	11	959						
72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41	답	927	138	789		국	전라북도			
73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60	답	1,923	23	1,900						
74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40	답	862	117	745						
75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59	답	1,876	24	1,852						
76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9	답	1,449	174	1,275						
77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58	답	1,899	13	1,886		국	장수군			
78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8	답	1,031	115	916						
79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7	답	2,395	294	2,101						
80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6	답	2,231	234	1,997						
81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096-2	현	12,853	11,065	888		국	국토교통부			
82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5	답	2,163	174	1,989						
83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4	답	716	59	657						
84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3	답	2,995	169	2,627						
85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2	답	1,369	56	1,313						
86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1	답	2,012	87	1,925						
87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30	답	1,531	76	1,455						
88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9	답	1,711	89	1,622						
89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8	답	3,233	210	3,023						
90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7	답	1,021	75	946						
91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6	답	2,290	176	2,114						
92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108	구	703	2	701		국	농림축산 식품부			
93	전북	장수	산서	마해	1107	도	436	22	414		국	농림축산 식품부			
94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5	답	2,659	386	2,273						
95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15	답	1,052	150	894						
96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4	답	1,248	160	1,088						
97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3	답	3,073	247	2,826						
98	전북	장수	산서	마해	922	답	2,829	182	2,647						



##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